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4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박은정 · 김준형 · 정춘생
김재원 · 양부남 · 차규근
서왕진 · 강경숙 · 손 솔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4%에 불과하고,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공소기각·면소 판결의 비율이 34.4%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신청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을 통해 거듭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임에도,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 다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충

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제262조제2항제2호 중 “공소제기를”을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결정을”을 “재수사 결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62조의3제3항 중 “제1항”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을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의4제2항 중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를 “제262조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이”로,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가 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 날
2. 검사가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제264조의2의 제목 “(공소취소의 제한)”을 “(공소제기의 의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을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를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제264조의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 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0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① (생략)	제260조(재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제26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생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u>공소제기</u> 를 결정한	2. ----- ----- <u>공소제기 또는 재</u>

다.

③ · ④ (생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수사를-----.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⑥ -----재수사 결정
에-----

-----관
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
하여야-----. 이 경우 관할 수
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
여야 한다.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① (생략)
-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

④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이-----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1. 검사가 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 날
- 2. 검사가 재수사 결과에 따라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제264조의2(공소제기의 의제 등)

①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4조의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

<u><신 설></u>	<u>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u>
<u><신 설></u>	<u>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u> <u>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